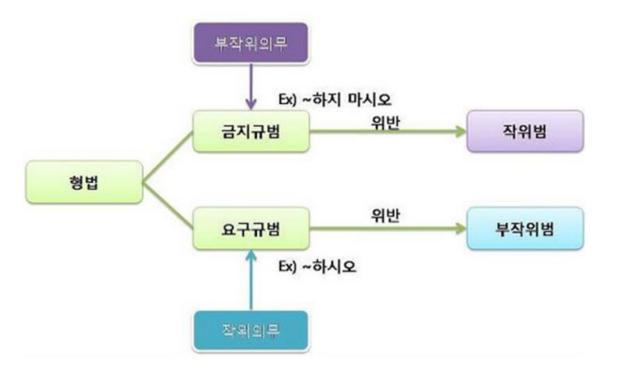
[부작위론]

(1)**부작위**

: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신체운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태도로 명령,요구 규범 (어떠한 행위를 하라는 규범)에 대한 위반행위 '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'

(2) 작위

: 규범적으로 금지되는 일정한 신체운동을 하는 적극적 태도로 금지규범(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규범)에 대한 위반행위 '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'



* 행 위 작 위 - 금지규범 ex)~하지 마라 부작위 - <u>요구, 명령규범 위반</u> ex)~해라 단순한 무위x 법이 요구하는 것을 안 했을 때

* 일반범 진정 부작위: 행위[부작위], 조문[부작위] - ex) 퇴거불응죄, 다중불해산죄 <u>부진정부작위</u>: 행위[부작위], 조문[작위] ^{진정신분범} 보증인 지위/ 의무 ex)친족, 경찰, 소방관

- **부진정부작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** (작위에 의한 부작위범x)
- 부작위의 동가치성 보증인지위 의무가 있어야 한다. (작위≠부작위)
- * **체계적 지위** 보증인<u>지위</u> <u>의무</u>→ 일반인x
- * **구성요건 요소설** 사실의 착오→ 고의x, 과실o (내 아들인 줄 모르고 구조를 안했다면 → **과실치사**) 법률의 착오→ (양 아버지가 아들 구조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구조를 안했다면 → **고의살인**)

[부작위범]

:제18조 "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**의무**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**원 인을 야기한 자** 가 그 위험발생을 **방지하지 아니한 때**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**처벌한다**."→ '원인을 야기한 자' = 보증인 지위

I. 부작위범의 개념

- 1. 의의-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
- 2. 부작위의 행위성
 - -인과적, 목적적 행위론은 부작위 행위성을 부정, 사회적 행위론은 인정
- 3.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
 - 작위는 사실판단의 영역 / 부작위는 규범판단의 영역
 - (1) 자연과학적 척도 인과관계, 에너지투입
 - (2) 중첩적 기준
 - (3) 규범적 척도 비난의 중범, 평가적 관찰방법
- (4) 의심스러운 때는 작위 작위 우선(부작위의보충성)

[보라매병원사건]

- 1) 살인 미필적 고의로도 범의를 인정한다.
- 2) 공동정범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할 것이 필요하고, 공동실행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<u>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</u>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**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**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어야 한다.
- 3)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·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, 이는 <u>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,</u>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리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<u>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</u> <u>니</u>며,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, 그 행위자가 과거에 행한 또 다른 작위의 결과에 의하여 <u>유지되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</u>. (오답 <u>유지되고 있다면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.</u>)
- 4)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에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~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·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.
- 5) 종범은 실행 착수 전에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.
- 6) [판결] 처 부작위 살인 /주치의, 과장 작위 살인 방조 /인턴 무죄

표. 분류

- 1. 진정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 (명령규범 위반)
 - ex) 퇴거불응 319조2, 다중불해산죄 116조
 - 부진정부작위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 (금지규범 위반)
 - ex) 아이에게 먹을 것을 안 줘 사망
- 2. 형식설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의 형식에 따라 구별하는 견해 (통설)
 - (1) 진정부작위범은 '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'
 - (2) 부진정부작위범은 '부작위에 의한 작위범'
- 3. 판례

"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이다."

Ⅲ. 성립요건

1. 일반적 행위가능성 :'행위개념'에 해당되어야!

- 2. 객관적 구성요건요소
 - (1) 구성요건적 부작위
 - 1) 공통
 - ①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
 - ② 부작위
 - ③ 개별적인 행위가능성 '구성요건해당성'이 부정된다.
 - (2)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부진정만 요구
 - (3) 인과관계, 객관적 귀속 부진정만 요구

2) 부진정 특유

- ① 보증인 지위
- ② 행위정형의 동가치성
- A. 순수한 결과야기적 결과범에는 의미가 없다. (살인, 유기, 상해, 방화죄)
- B. **행태의존적 결과범에서만 문제시**(통설) 공갈, 사기, 특수폭행, 특수 협박
- 판) 물에 빠진 후 살해의 범위를 가지고 구호하지 않은 채 방관한 행위(부작위)는 직접 빠뜨리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될 만한 살인의 실행행위이다.
- 판)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만한 것이라면,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

IV. 보증인 지위

:일정한 법익과 특수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 또는 보장해주어야 하는 지위

- 1. 의의 형법 18조 '위험발행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'
 - (1) 법적 성질 부진정부작위범은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갖게 된다.
 - (2) 보증인지위의 요건 **법적의무**여야 한다. (X 도덕적, 사실상 가능성, 부조의무)

2. 체계적 지위

- (1) **위법성요소설** (2) **구성요건요소설** (Nagler의 보증인설)
- (3) **이분설 (통설)**
 - 1) 보증인지위 구성요건착오
 - 2) 보증인의무 금지착오

3. 형식설 분류 (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)-판례

- (1) 법령 친권자, 부부, 친족, 경찰, 의사, 운전자구호
- (2) 계약 간호사, 신호수, 보모, 고용, 의무 없이 노약자를 인수한 자
- (3) 조리 신의칙 (단순 <u>도덕 종교</u>상은 X)
- (4) 선행행위-미끄러운저수지, 실화자의소화, 주교사, 과실로 상해를 입힌 자의 구호